

**평등, 연대, 평화의
민주노총 2007년 대선정책요구(안)**

2007. 11.

● 민주노총 2007년 대선정책요구 및 기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등, 연대, 평화의 대선정책요구

평등한 노동

하나 비정규 권리보장 및 차별해소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비정규직 노동자 참정권 확대보장

둘 소외 받지 않는 노동

4.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5. 5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근기법 적용
6.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다쳐도 치료받고 일할 권리
7.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적극적 고용보장
8.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노동자의 전면 사면
9.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셋 대안적 노사관계의 구축

10.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국제 핵심노동협약의 비준
11. 산별노사관계의 구축과 전체노동자에 단체협약 적용
12.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넷 차별없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13. 실노동시간 2000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주5일제 시행
14. 공공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충
15.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교육받을 권리 보장

빈부격차 없는 사회

하나 복지강화와 사회적 연대 구축

16.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17.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8.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과 보육예산 2%로 확대
19.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20.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21.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둘 경제 공공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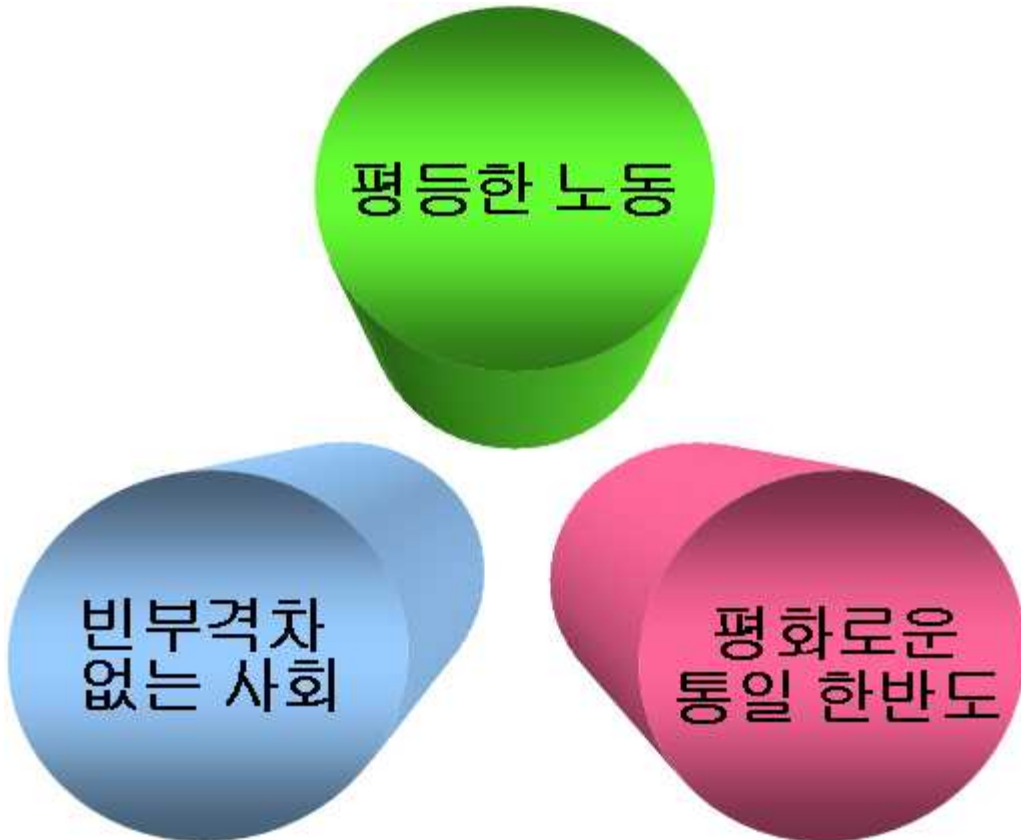
22.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23.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24. 신자유주의적 FTA 저지 및 국제금융투기자본 규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25.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안미군 철수
26. 평화협정체결과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 대선정책요구의 3대 기조 ●



■ 평등한 노동

“87년 투쟁 20년, 그리고 불평등의 고착화”

1987년 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현장 노조원의 참여와 통제에 기반을 둔 민주적 노동운동, 노조원 대중의 강고한 투쟁력에 기초를 둔 투쟁적 노동운동, 그리고 자본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노동운동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쌓아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과연 한국의 노동현실이 노동운동의 성장에 부합할 만큼 성숙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삶과 투쟁은 이 땅의 노동현실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자본과 정부에 의해 추진된 노동배제와 노동시장유연성 전략, 그리고 97년의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분절을 낳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리고 여성·이주·장애인 등 모든 소외받는 노동자 민중에게 극심한 차별을 부여했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했

다.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발전적 노사관계의 재편”

평등하게 노동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기업규모에 따른, 성별, 국적, 피부색에 따른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구분이 없는 사회, 여성이 고용·인사·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 청년, 고령자가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공공부문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사회발전의 한 축으로서 실효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된 모든 노동자 민중이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보편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전반의 체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안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안정화시킬수 있는 제도적 개정, 자율적 노조활동과 자치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그리고 기업별 노사관계체제를 극복하여 노사관계의 고도화 및 초기업적인 노사관계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 빈부격차 없는 사회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

노동자민중의 삶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연일 치솟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와 불안정한 노후, 아이들 양육 걱정 때문에 서민경제는 휘청거리고 있고,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700만 빈곤층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반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또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장 한미 FTA를 통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여전히 온존하는 재벌체제는 한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금융투기자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시도되는 사유화정책은 그나마 취약한 공공성마저 황폐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연대로 빈부격차 없는 사회를!”

빈곤과 빈부격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아름다운 연대가 형성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교육, 의료, 주거 뿐 아니라 노후와 보육 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한다.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조세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해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

또한 성장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경제체제가 마련되어

야 하며, 그동안 면죄부를 줬던 재벌체제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함께 원하청 불공정거래, 투기금융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모든 민족구성원이 행복한 세상”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지배간섭이나 개입 없이 우리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인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상호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하나의 나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안은 낮은 단계이건 더 낮은 단계이건 상위의 통일기구를 만드는 연방제 방식을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 통일의 과정에서 이룩된 공존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리가 노사관계를 비롯한 제반사회관계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자주통일과 평화균축에 협조하고 도움이 되는 외세에 대해서는 호혜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되, 전쟁위협과 군비증강 등의 강요는 배격되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소외와 독점의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평화와 평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켜나간다.

“일하는 사람 중심의 통일세상 건설”

생산과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경영인을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세상 건설에 남북노동자가 연대하여 앞장서야한다. 민족의 절대다수 구성원이면서도 분단을 이유로 가장 큰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노동자계급이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노동자의 단합된 힘으로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 등 제영역에서의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구, 국회, 법원,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 제영역에서의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확산하고 사회적 대표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며, 남북노동자 사이 및 정규.비정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보장과 임금,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등의 격차를 시급히 축소해 나가야 한다.

● 민주노총 11대 핵심요구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권리보장입법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권리보장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중소기업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 여성·이주·장애인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여성에게 고용의 질과 건강권이 보장된 노동의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및 단체협약의 적용

‘복수노조에 대한 자율교섭제를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별체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통하여 모든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재예방 및 치료보장을 통한 안전한 노동현장 실현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다쳐도 치료받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을 연간 2,000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나누기를 통하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정책대안을 추진하여야 하며, 주거비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예산 확충**

‘누진적 세수확보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왜곡된 경제구조의 상징인 재벌체제를 해소하고, 원하청간 불균형한 지배구조를 일소하여,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적 FTA 저지 및 국제금융투기자본 규제**

‘한미FTA를 포함한 일체의 FTA를 거부하고,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을 규제하여 호혜로운 국제무역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 **평화협정 체결 및 연방제 평화통일**

‘정전협정, 유엔사,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평화적인 자주통일을 실현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26대 정책요구 및 85대 세부개선과제 ●

1️⃣ 평등한 노동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차별해소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특별 기금」 설치
 -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및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 2)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실행

2.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3)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보장 및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 5) 원청사용자성 확대 등 간접고용 규제
 - 6)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7) 비정규직 4대 보험 전면 적용

3. 비정규직 노동자 참정권 확대보장
 - 8) 주요선거일 유급 휴무일화 및 노동자 투표시간의 노동시간 인정

둘째, 소외받지 않는 노동

4.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상향
 - 9)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 장기적으로 60%로 상향
 - 10)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11)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
 - 12) 공공 공사, 납품, 용역 및 서비스 등 공공계약 체결시 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명시
 - 13)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5. 5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14) 5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6.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다쳐도 치료받고 일할 권리

- 15)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
- 16) 현장 노동자의 알권리와 산재예방사업 참여권 보장
- 17)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18) 산재보험 적용기준 확대 및 산재승인 방식 변경

7.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적극적 고용보장

- 19) 여성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 20) 동일노동 동일임금, 승진·승급의 차별 철폐
- 21) 적극적 조치의 실행사업장 확대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주 처벌 제도 강화
- 22)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완벽한 사회 책임시스템 구축
- 23)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성평등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마련

8.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 사면

- 24) 이주노조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 25)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사면
- 26) 노동허가제 도입(사업장이동권 보장, 5년 체류원칙)
- 27) 이주정책에 대한 노동자대표 참여

9.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28)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 29)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안적 제도 마련
- 30)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셋째, 대안적 노사관계의 구축

10.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국제 핵심노동협약의 비준

- 31) 공무원·교수·교사 노동자 기본권 보장
- 32)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 강제중재 제도 폐지
- 33)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보장,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 34)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
- 35)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11. 산별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전체노동자에 단체협약 적용

- 36) 산별교섭안정화를 위한 3대 과제 법제화
- 37) 공무원, 교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정부 분과별 직접 교섭제도 마련

38) 산업정책에 대한 협의권 보장 등 산별노조 활동 확대

12.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 39)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안별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 40) 정기적인 총리급 노정 대화틀 마련

넷째,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13. 실노동시간 2000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주5일제 시행

- 41) 연장근로제한, 연속2주 이상 연차휴가 보장, 휴일영업 제한
- 42) 주40시간제 전면시행 및 근로시간 휴게, 휴일특례 삭제
- 43)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운동 추진

14. 공공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충

- 44)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 45) 안정된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15.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교육받을 권리 보장

- 46) 실업급여제도 개편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 47) 평생학습시스템의 도입
- 48) 65세 정년제 도입
- 49) 지역단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및 노조참여보장
- 50) 노조 적극 개입-주도하는 산업별 고용관리체제의 구축과 운영

2 연대 - 빈부격차 없는 사회

첫째, 복지강화를 통한 사회적 연대 구축

16.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 51)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52)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개혁과 국민 주치의 제도 시행
- 53) 공공병원 50% 확충
- 54) 사교육비 경감과 실질적 무상교육 실시

17.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55) 토지보유세(실효세율 2% 목표)와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및 거래세 인하

- 56) 공공택지 조성 및 국.공유지 확대
- 57) 올바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공급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 58) 상환능력을 감안한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정착
- 59) 세입자 보호 및 최저주거기준 실효성 확보

18.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과 보육예산 2%로 확대

- 60)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 61) 보육예산 확충을 통한 단계적 무상보육 실시

19.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62) 2028년까지 기초연금 15% 달성
- 6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재개정
- 64) 연금의 가입자 참여 보장을 통한 민주적 운영
- 65)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0.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 66) 최저생계비 현실화
- 67) 가구 상황에 따른 개별급여 지급

21.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 68) 주식양도차익 및 금융소득 과세를 통한 누진적 세수확보
- 69) 예산낭비 절감과 세출구조조정
- 70)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둘째, 경제공공성 강화

22.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71) 재벌의 순환 출자구조 해소와 소유 및 경영세습 금지
- 72) 원·하청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제 : 사회적 책임 강화

23.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 73) 주식매각을 포함한 공기업 매각 중단 등 공공부문 민영화 즉각 중단
- 74)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경제특구 등 특별법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 중단 및 관련조항 폐지
- 75) ‘공기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
- 76) 공기업 이사회, 공공기관운영위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노동자와 일반시민대표

과반수 참가

24. 신자유주의적 FTA 저지 및 국제금융투기자본 규제

77) 한미 FTA, 한-EU FTA의 원천 무효화 및 통상절차법 제정

78) 국가부문 소유관계변동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국제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3 평화 -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25. 국가보안법철폐 및 주한미군철폐

79) 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 전면석방

80)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81) 주한미군 침략적 유연성 폐기와 한국군 파병 금지

82) 주한미군철폐와 한미예속동맹 폐기

26. 평화협정체결과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83)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관철

84) 동북아비핵지대화과 핵우산위협 폐기

85) 평화협정체결 및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